

OECD 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 決定要因 分析

金一中 · 李載冕

本論文에서는 OECD 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와 頻度指數를 계산하고, 實證分析을 통하여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을 파악하여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OECD 국가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국가별·산업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資本 對 勞動 比率과 産業成長率이 높을수록 대한국 비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원화의 對美달러에 대한 平價切下率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일본, 유럽공동체, 유럽자유무역지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이 韓國의 輸入增加率과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이 무역규제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I. 서 론

本論文의 目的은 OECD 국가들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것의 결정모형을 개발, 검증하는데 있다.

關稅나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Pincus [43], Baldwin [28], Choh [31], Caves [30], Ray [45, 46], Marvel과 Ray [40], Lavergne [39], Ray와 Marvel [47], Deardorff와 Stern [35], Clark [33], Chow와 Kellman [32], 그리고 田溶德과 辛光湜 [8] 등이 있다.

이들 중 특히 Ray [45, 46]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1970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지수(the indices of the incidence of NTB), 그리고 선진 7개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세 및

東國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忠北專門大學 貿易實務科 專任講師. 본 논문은 1994년 2월 16일에 개최된 1993年度 韓國經濟學會 學術大會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同 學術大會에서의 논평자였던 산업연구원 박기홍 박사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비관세장벽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비관세장벽이 비교열위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외의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해외의 비관세장벽은 고도로 보호되고 있는 산업의 관세보호를 보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이 제3세계에 비해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Marvel과 Ray [40], Ray와 Marvel [47]도 ITC의 1975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공동체, 캐나다,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종속변수로 하여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무역장벽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여 비관세장벽이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자유화를 잠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소비자재, 농산물, 섬유의 관세보호를 보충하고 있다고 하였다.¹⁾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과 기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비관세장벽 결정요인에 대한 여타 가설들이 과연 한국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에도 유효한지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74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UNCTAD 방식을 이용하여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와 頻度指數를 계산하여 이것들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지수와 OECD 제국 및 한국의 수출입 산업구조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OECD 제국의 국가별, 규제형태별 비관세장벽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제Ⅱ절에서는 범위지수와 빈도지수의 정의 및 OECD 국가의 對韓國 範圍指數와 頻度指數를 계산하여 그 추이를 분석한다. 제Ⅲ절에서는 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 및 한국과 OECD 제국의 경제구조 등을 토대로 하여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결정모형을 설정하고, 제Ⅳ절에서는 실증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II.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 및 頻度指數

1. 範圍指數와 頻度指數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그 범위에 대한 정보의 결여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UNCTAD가 OECD 諸國 및 개도국의 포괄적인 비관세장벽 목록을 작성하고 비관세장벽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범위지수와 빈도지수를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OECD 諸國과 약 80여 개 국에 달하는 개도국을 포함하는 貿易規制資料銀行(Data Base on Trade Measures)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UNCTAD 목록접근방법(inventory approach)에 근거한 연구가

1) 1983년의 연구는 임시관세율을, 1984년의 연구는 실제관세율을 사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법론은 동일하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범위지수와 빈도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Nogués, et al. [42]과 Laird와 Yeats [38]가 있는데, Nogués등은 1981년~1983년 기간의 16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의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고, Laird와 Yeats는 1966년의 자료(Ingo Walter [48], pp. 341~342, Table 2의 자료를 수정)와 1986년의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의 확산을 확인하였다.

비관세장벽의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의 계산 방법은 한 수출국의 특정 수입국에 대한 총수출액과 규제받는 각 상품의 수출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의 적용범위를 측정하는 것을 범위지수(coverage index: 이하 표에서는 C_j 라 한다)라 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_{j,t} = [\sum Dij,t \cdot Mij,t / \sum Mij,t] \cdot 100 \quad (1)$$

식 (1)에서 $C_{j,t}$ 는 t 년도 규제국 j 의 범위지수이다. Mij,t 는 t 년도 특정수출국으로부터 규제국 j 로의 품목 i 의 수출액, Dij,t 는 t 년도 i 품목에 비관세장벽이 적용되면 1, 적용되지 않으면 0을 취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이다. 따라서 $C_{j,t}$ 는 t 년도 규제국 j 의 범위지수로서 상품그룹의 총수입액과 비관세장벽에 적용받는 제품의 수입액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범위지수는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교역량을 금액면에서 나타내 주지만,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피규제액에서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비관세장벽의 적용이 규제받지 않던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위지수만으로 비관세장벽의 영향력을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총수입의 품목수에서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는 품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頻度指數(frequency index: 이하 표에서는 F_j 라 한다)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_{j,t} = [\sum Dij,t \cdot Nij,t / Nij,t] \cdot 100 \quad (2)$$

식 (2)에서 $F_{j,t}$ 는 t 년의 규제국 j 의 빈도지수이다. Nij,t 는 t 년도 특정수출국으로부터 규제국 j 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i 의 수, Dij,t 는 t 년도 i 품목에 비관세장벽이 적용되면 1, 적용되지 않으면 0인 가변수이다. 따라서 $F_{j,t}$ 는 규제국 j 의 빈도지수로서 상품그룹의 총수입 품목수와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품목수와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이 지수를 계산하는데 포함한 품목수는 CCCN 4단위로 1,030개, HS 4단위로 1,259개이다.²⁾

2) 본 논문에서는 UNCTAD 무역규제자료은행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SITC 상품분류를 사용하였다.

2. 國別 範圍指數 및 頻度指數

1) OECD 諸國³⁾의 範圍指數

본 논문에서 분석한 OECD 諸國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범위지수 추세는 한국의

〈표 1〉 OECD 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 範圍指數 및 頻度指數

연 도	OECD* 諸國		미 국		일 본		유 럽** 공동체		유럽자유*** 무역지역		캐나다		호 주	
	Cj	Fj	Cj	Fj	Cj	Fj	Cj	Fj	Cj	Fj	Cj	Fj	Cj	Fj
'74	13.7	10.0	27.1	9.7	3.9	0.6	4.7	9.3	46.4	4.2	3.2	9.1	-	-
'75	25.2	10.7	37.3	9.7	3.2	0.7	37.9	9.3	62.0	4.7	7.2	9.1	42.7	2.6
'76	26.3	10.9	31.8	9.9	18.6	1.2	30.0	9.4	48.0	4.7	4.1	9.2	27.2	2.6
'77	26.8	12.3	34.4	9.9	22.0	1.2	28.5	10.4	20.7	4.7	14.1	9.7	41.5	3.3
'78	34.7	14.6	46.9	11.4	21.8	1.2	33.1	11.9	14.9	5.0	16.1	9.7	32.2	3.2
'79	34.8	14.9	43.1	11.6	20.4	1.2	38.6	12.3	22.9	5.0	43.0	9.8	28.8	3.4
'80	37.7	14.9	48.9	11.7	18.5	1.2	40.6	12.3	24.4	5.0	50.8	9.8	28.2	3.4
'81	37.2	14.8	50.7	11.6	15.6	1.2	39.8	12.3	13.3	4.9	45.6	9.8	36.1	3.6
'82	33.6	14.9	34.1	11.0	32.4	4.9	37.6	12.3	8.7	4.9	52.6	9.9	32.9	3.6
'83	30.8	15.4	32.2	10.9	28.2	4.9	31.6	12.6	9.8	4.9	41.9	10.0	32.7	4.0
'84	38.3	15.9	33.6	10.9	27.9	4.9	29.7	12.6	9.1	4.7	37.8	10.3	27.0	4.5
'85	28.1	16.2	30.5	10.9	25.6	4.9	29.1	12.6	7.1	4.5	28.8	10.3	23.5	4.4
'86	27.7	16.4	25.5	11.1	29.8	4.9	34.1	12.5	11.0	4.5	31.5	10.2	25.4	4.3
'87	26.8	16.0	22.3	11.3	32.2	4.9	33.0	12.4	13.1	4.2	35.1	10.3	22.1	3.7
'88	18.2	17.9	19.8	13.3	7.9	1.8	28.8	13.5	11.7	5.6	25.9	11.9	13.6	4.6
'89	18.6	17.8	19.8	13.4	10.4	1.8	31.1	13.7	9.9	5.6	23.9	11.7	10.3	4.1
'90	18.1	18.0	19.7	13.6	8.5	1.6	30.0	13.8	6.2	5.6	23.3	11.7	10.0	4.1
'91	18.1	16.8	18.8	13.7	9.4	1.6	29.3	12.0	7.8	5.6	19.6	10.9	8.8	4.3

자료: 大韓貿易振興公社, 『主要國의 輸入規制調査』 [15]; 大韓貿易振興公社, 『主要國의 輸入規制現況』, 1981~1983; 韓國貿易協會, 『主要先進國의 輸入規制總覽』, 1985~1992에서 발표된 피규제액을 本章의 식 (1)과 (2)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계산하였다.

주 : * OECD 제국의 범위지수와 빈도지수는 연구대상 20개국의 평균범위지수 및 평균빈도지수를 의미한다.

** 유럽공동체는 1991년 말 현재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는 12개국을 의미한다.⁴⁾

*** 유럽자유무역지역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4개국을 의미한다.⁵⁾

3) 본 논문에서는 OECD 諸國의 24개국 중 한국과의 무역거래가 부진하거나 자료의 제약 등으로 스위스, 에이레, 뉴질랜드, 터키 4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공동체 등 20개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 유럽공동체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에는 공동 규제와 개별국 규제가 있는데 점차 공동 규제화하고 있고, 對韓國 규제액 중 개별국 규제의 비율이 15.5%(1988), 14.9%(1989), 4.8%(1990), 4.4%(1991)로 낮아지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동 규제와 합하여 유럽공동체 전체의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를 계산하였음.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⁶⁾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19.6% 증가한 1984년에는 최고의 범위지수를 나타냈다(〈표 1〉 참조). 1985년 수출상승률이 3.6%로 저조하면서 범위지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6년~1988년 동안의 3저현상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이룬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⁷⁾

이와 같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 범위지수도 상승하고 한국의 수출이 저조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는 OECD 제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기만 하면 GAT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및 GATT 6조의 반덤핑관세 등을 원용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범위지수가 높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관심품목이 OECD 제국의 보호대상품목이기 때문이다. OECD 제국에 있어서 주보호의 대상산업은 비교우위가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여 낮은 기술과 저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P. C. Y. Chow and M. Kellman [32], pp. 652~653). 상기의 결과는 한국의 수출상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산된 OECD 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범위지수를 UNCTAD 貿易規制資料銀行의 선진국 평균 범위지수(〈표 2〉)와 비교하여 볼 때 1990년을 제외하고는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범위지수가 높아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은 한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제국 전체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평균 범위지수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 유럽공동체, 캐나다로서 이들 국가가 상당히 높은 대한국 비관세장벽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유럽공동체의 비관세장벽이 높지 않다는 Edward J. Ray와 Howard P. Marvel [4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관세규제가 여타 선진국보다 현저히 약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는 미국이 현저히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에 더 높은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제국은 한국의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상당한 규제정책을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5) 유럽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섬유류에 대한 쌍무쿼타 외의 개별국 규제는 4개국 합계가 1만 달러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4개국을 합하여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를 계산하였음.

6) 제1차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973년 98.6%, 1974년 38.3%, 1976년 51.8%, 1977년 30.2%, 1978년 26.5%로 고도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1], p. 25).

7)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988년의 28.4%에 비하여 1989년 2.8%, 1990년 4.2%, 1991년 10.5%로 상당히 저조하고 무역수지도 1988년의 89억 달러 흑자에서 1989년 9억 달러 흑자, 1990년 48억 달러 적자, 1991년 97억 달러 적자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한국무역협회 [21], p. 25), 동기간의 범위지수도 1975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UNCTAD의 範圍指數 및 頻度指數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UNCTAD	연료포함	Cj	24.2	24.6	24.8	18.7	19.5	20.6	20.8	17.4	18.5	18.4
	모든제품	Fj	16.0	16.1	16.3	16.3	17.6	17.5	17.2	15.3	15.2	14.9
무역규제 자료은행	연료제외	Cj	18.7	19.3	19.5	19.9	20.9	22.3	22.6	17.3	18.6	18.5
	제품	Fj	15.9	16.0	16.3	16.3	17.6	17.5	17.2	15.3	15.2	14.9

자료: UNCTAD, TD/B/1126/Add. 1 [54], p. 8; TD/B/1160/Add. 1 [55], p. 6; TD/B/1284/Add. 1, 1991.

주 : 1981년~1987년 기간은 1984년 상품그룹별 수입가중치, 1988년~1991년 기간은 1988년 상품그룹별 수입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2) OECD 諸國의 頻度指數

UNCTAD 貿易規制資料銀行에 의거한 OECD 제국 비관세장벽의 빈도지수는 1980년 초부터 상승하다가 1986년을 절정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의 빈도지수는 1991년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표 1〉 참조).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의 범위 지수가 1980년대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빈도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의 대상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철강, 신발 등 특정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1970년대에는 주 규제대상품목이 아니었던 전자제품이 1980년대에 주 규제대상품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 수출의 주종을 이루던 대기업형 상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형 상품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頻度指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유럽공동체, 캐나다이며, 미국의 경우 범위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빈도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미국의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은 규제대상품목에 있어서 계속 확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공동체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범위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빈도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요 OECD 제국의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은 전 품목에 걸쳐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 유럽자유무역 지역(EFTA), 호주의 빈도지수는 상당히 낮아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이 일부 품목에 설치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規制類型別 範圍指數 및 頻度指數

수량규제의 범위지수는 1980년대 초를 절정으로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1988년 이후에는 1980년대 초에 비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수량규제의 근간

〈표 3〉 先進國의 類型別 對韓國 非關稅障壁 推移 (단위: 件)

규제유형\연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비관세장벽	19	22	30	45	59	69	70	69	83	91	98	99	*	**	88	81	86	75
수량규제	19	21	26	37	47	54	54	53	58	61	58	57	54	55	53	48	48	40
정부간협정	8	8	11	11	12	13	14	14	14	16	17	16	14	17	19	18	19	18
업체간협정	1	1	2	2	7	9	9	9	8	10	10	10	10	9	5	6	6	3
일방적국별쿼타	9	9	10	22	25	26	24	24	22	21	19	19	17	16	16	14	13	9
관세할당	1	3	3	2	3	6	7	6	14	14	12	12	13	13	13	10	10	10
가격규제			2	5	8	11	11	12	14	20	29	31	37	35	33	30	36	33
반덤핑관세			2	3	4	7	7	8	13	19	27	29	33	30	28	26	30	28
상계관세				1	1	1	1	1										
반덤핑/상계혼합													1	2	1	1	1	1
기준가격제				1	3	3	3	2	1	1	1	1	1	1	1	1	1	
가격인상 약속								1			1	1	2	2	3	2	4	4
절차규제		1	2	4	4	4	5	4	11	10	11	11	14	14	2	3	2	2
행정지도		1	2	2	2	2	3	3	6	5	5	4	4	4	1	1		
품질 및 규격									4	4	4	6	9	9				
불공정거래											1	1	1	1	1	2	2	2
수입허가제			1	2	2	2	2	1	1	1	1							

자료: 李載冕·金一中, “先進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推移와 政策課題”, 『韓國貿易學會誌』, 第18卷 [7], p. 158, 표 1-2.

주 : * 105, ** 104.

은 섬유류의 다자간섬유협정 및 철강에 대한 정부간협정으로 규제형태는 쌍무쿼타이다. 수출자율규제(VERs) 및 시장질서유지협정(OMAs)의 규제형태를 취하고 있는 업체간 협정은 1980년대 초 이후부터는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일방적 국별쿼타는 OECD 제국이 GATT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존속하고 있던 잔존수입제한으로 1970년대 말부터 범위지수가 감소하여 1986년부터는 오히려 범위지수가 상당히 낮은(1 이하) 관세할당의 범위지수보다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OECD 제국에서 잔존수입제한을 철폐한 데에도 기인하지만 피규제대상품목의 수출 감소도 한 요인이다.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은 〈표 3〉과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격규제가 증가하여 1980년 대한민국 비관세장벽 건수의 15.9%에 불과하였던 가격규제가 1991년에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선별적인 적용이 용이하고 수출국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외명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규제국의 국내 압력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제국의 규제유형별 범위지수에 있어서는

〈표 4〉 OECD 제국의 규제유형별 범위지수

규제유형\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수량규제	34.4	34.5	27.5	26.5	25.0	23.2	21.6	19.6	14.6	17.2	16.3	16.3
정부간협정	26.3	26.7	23.7	23.1	21.7	20.5	19.0	16.4	12.1	13.7	13.9	13.9
업계간협정	5.2	5.2	1.8	1.6	1.6	1.3	1.4	1.5	1.1	2.0	0.9	0.9
관세 할당	1.1	0.8	0.6	0.5	0.4	0.3	0.8	1.0	0.9	0.9	1.0	1.0
일방국별쿼타	1.8	1.7	1.4	1.3	1.2	1.1	0.5	0.6	0.5	0.6	0.5	0.5
가격규제	2.0	1.7	1.0	1.0	2.4	1.5	1.8	1.6	0.8	1.3	1.8	1.7
반덤핑관세	0.3	0.3	0.7	0.9	2.3	1.4	1.5	1.2	0.5	0.8	1.3	1.3
상계 관세	1.0	1.2										
반덤핑+상계							-	0.2	0.2	0.2	0.2	0.1
기준가격제	0.7	0.1	0.3	0.1	-	0.1	0.2	0.2	0.1	0.1	-	
가격인상약속		0.2			-	-	0.1	-	-	0.2	0.4	0.3
절차규제	1.2	0.9	5.0	3.3	3.6	3.3	4.3	5.5	-	-		
품질 규격			3.8	3.2	3.5	3.3	4.2	5.5				
행정 지도	1.2	0.9	1.1	0.1	0.1	-	0.1	-	-	-		
불공정거래					-	-	-	-	-	-		
수입허가제	-	-										

자료: 〈표 1〉과 同一.

주: “-”는 규제는 받았으나 금액이 미미하여 수치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규제의 범위지수가 수량규제의 범위지수보다 상당히 낮고 1982년~1987년 기간에는 오히려 절차규제보다 낮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은 가격규제보다는 수량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절차규제가 가격규제보다도 더욱 큰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정부기관이 1988년 이후부터 품질 규격에 의한 규제를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에 대한 발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현재까지 對韓國 貿易障壁으로 간주하여 발표하였었다면 절차규제의 범위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유형에 있어서 수량규제에서 가격규제로의 전환에는 특히 반덤핑관세의 증가가 기여한 바 크다. 이렇게 반덤핑에 의한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한 규제이므로 GATT의 규범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여타국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 규제가 가능하고 발동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가격규제의 근간인 반덤핑관세는 빈번하게 행해진

8) Patrick A. Messerlin(41), p. 586)은 반덤핑관세를 선호하는 法的 理由는 반덤핑관세가 GATT에 일치하기 때문이며, 經濟的 理由는 수출자유규제보다 더욱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

규제건수에 비해서(〈표 3〉 참조) 범위지수가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소액수입이라도 수입이 급증하기만 하면 반덤핑제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수량규제는 주로 정부 및 업계 간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금액면이나 품목수량 면에서 다액·다량의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규제의 범위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가격규제, 특히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일개 업체조차도 개별 수입경쟁품목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있으므로 규제건수는 자연히 빈번해지지만 소액·소량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지수가 낮다.

〈표 5〉 關稅群別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

(단위: %,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규제 국별	관세군별	선진국에 대한 규제			개도국에 대한 규제		
		광의의 비관세 장벽	협의의 비관세 장벽	반덤핑관 세/상계 관세*	광의의 비관세 장벽	협의의 비관세 장벽	반덤핑관 세/상계 관세*
미국	고관세군	42	37	14	43	36	30
	저관세군	16	9	8	15	9	10
	전 체	20	13	9	20	13	13
일본	고관세군	25	23	—	25	23	—
	저관세군	15	15	—	12	12	—
	전 체	17	16	—	14	14	—
유럽 공동체	고관세군	62	53	2	74	69	1
	저관세군	20	13	2	36	31	2
	전 체	38	31	2	51	46	2

자료: UNCTAD, REVIEW([56], No. 1)

주 : 1) 고관세군은 10% 이상, 저관세군은 10% 미만으로 동경라운드 양허세율 기준이다.

2) 광의의 비관세장벽과 협의의 비관세장벽의 차이는 의사관세조치, 수입예치금, 과징금,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자동승인, 수입감시의 포함과 불포함의 차이이다.

3) *은 1984년~1989년간 조사, 가격인상약속 및 관세부과가 이루어진 조치이다.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형태에서 반덤핑관세가 빈번한 것은 보호주의조치의 남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의미의 덤핑만을 고려한다면, 수입국내 시장의 판매가격이 한국내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편 UNCTAD 貿易規制資料銀行의 관세군별 범위지수(〈표 5〉)에 따르면 고관세군의 경우 비관세조치까지 가세되어 이중의 규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래 관세에 의하여 보호받는 산업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할수록 고율의 관세를 유지

라고 하였다. 반면에 Piontek([44], p. 70)은 유럽공동체의 경우 GAT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피규제국의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GATT 6조에 의거한 반덤핑관세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비관세장벽까지 집중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OECD제국의 비관세장벽이 GATT의 다자간협상에 의한 관세를 인하여 따라 낮아진 관세장벽을 보충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이 관세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⁹⁾

수량규제의 빈도지수는 범위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는 달리 모든 OECD 제국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빈도지수의 상승으로 미루어 볼 때, 被規制品目的 수출 감소등의 원인으로 비록 범위지수가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은 계속 확산되어 왔으며(〈표 6〉 참조), 수량규제의 대상품목이 다양화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술한 추세는 가격규제에서도 유사하여 가격규제까지도 확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규제에서는 미국의 빈도지수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표 6〉 OECD 제국의 규제유형별·국별 빈도지수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수량규제	18.5	18.3	18.6	18.2	18.0	17.4	16.9	20.3	19.9	19.8	19.7
미 국	11.0	10.8	10.3	10.1	10.1	10.1	10.1	12.5	12.5	12.5	12.5
일 본	1.4	1.4	1.5	1.5	1.5	1.5	1.5	1.7	1.7	1.7	1.7
유럽공동체	11.8	11.8	12.1	12.1	12.1	11.9	11.9	12.9	12.8	12.7	11.9
유럽자유무역지역	5.1	5.1	5.1	4.9	4.7	4.7	4.4	5.6	5.6	5.6	5.6
캐 나 다	9.6	9.6	9.6	9.6	9.6	9.3	9.3	10.5	10.4	10.4	10.4
호 주	3.2	3.3	3.3	3.3	3.3	3.1	2.9	4.1	4.0	3.9	3.9
가격규제	2.1	2.5	3.0	3.7	3.7	4.2	3.9	3.8	3.7	4.1	2.6
미 국	0.2	0.2	0.2	0.3	0.3	0.6	0.8	0.5	0.5	0.7	0.8
일 본											
유럽공동체	1.2	1.2	1.2	1.2	1.2	1.2	1.2	1.4	1.6	1.8	0.9
유럽자유무역지역											
캐 나 다	0.4	0.5	0.7	1.2	1.4	1.6	1.7	2.1	2.0	2.0	1.0
호 주	0.4	0.7	1.1	1.4	1.4	1.5	0.9	0.4	0.1	0.1	0.3
절차규제	0.4	4.0	3.9	4.0	3.9	4.3	4.3	0.2	0.3	0.2	0.2
미 국				0.1	0.1	0.1	0.1	0.1	0.2	0.2	0.2
일 본	0.3	3.9	3.8	3.8	3.8	3.8	3.8	0.2	0.2		
유럽공동체					0.1	0.3	0.3				
유럽자유무역지역					0.1	0.1	0.1				
캐 나 다											
호 주	0.1	0.1	0.1	0.1							

자료, 주: 〈표 1〉과 同一.

9)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Ray [45, 46], Marvel과 Ray [40], Ray와 Marvel [47]을 참조하라.

III.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

본절에서는 전절에서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 그리고 한국의 수출산업구조 및 OECD 제국의 수입산업구조를 토대로 하여 OECD 제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시행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는 한국이 수출에 호조를 띠었던 1975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소위 3저현상이라고 불리는 對外興件的 호전에 힘입어 급속한 수출을 기록하였던 1986년~1988년 기간에 절정을 이루다 그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높으면 교역상대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범위지수도 상승하였고,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감소하면 범위지수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産業研究院([18], p. 40), 張義泰([9], p. 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의 양적 극대화정책이 선진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과 같다. 따라서 韓國의 對規制國 수출증가율과 對韓國 非關稅障壁과는 正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Ray [46]의 연구에서도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변수로서 미국의 수출을 고려하여 正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OECD 제국이 상호주의를 주창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의 OECD 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과 OECD 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과는 逆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에서도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을 說明變數로 이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고 있다(左承喜 [10], p. 101). 이것은 또한 산업연구원([18], p. 4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이 자국의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대한국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수출의 양적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가공조립무역구조라는 특성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자재, 부품 등을 선진국에서 수입하여 이것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조립 후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생산방식을 택하였다(姜哲圭와 張錫仁 [1], pp. 43~49). 이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부존자원구조를 고려할 때 국제비교우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상품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반면에 Hufbauer [37], Baldwin [27], Balassa [26], 산업연구원 [17] 등의 선행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열위에

10) 張義泰 [9]는 1975년~1987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구조가 다양화되었지만, 아직도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선진국의 사양산업임을 밝히고 있다.

Hillman [36] 등에 따르면 선진국은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Heckscher-Ohlin 정리에 따라 한국등 개도국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어 이를 수출하고, 선진국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비교열위가 있으므로 이를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Ray [45]는 1970년의 미국의 명목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에서 명목관세는 노동집약도와와는 正의 관계를 갖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반대로 노동집약도와와는 逆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예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및 신발산업에 있어서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範圍指數가 OECD 제국의 제조업 및 전산업 평균 범위지수보다 높은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¹⁾ 따라서 OECD 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은 한국 수출산업의 資本대 勞動 비율과 逆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노동이 동질적이 아니라고 가정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 가정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미숙련노동을 보호하는가이다. Ball [29]은 Stolper-Samuelson 정리에 근거하여 미국의 최소한 요소인 미숙련노동의 비율이 높은 산업을 보호한다는 가정을 세워 1965년의 미국의 관세는 미숙련노동의 저임금 산업을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Cheh [31]는 미숙련노동의 비율이 높은 산업이 더 높은 명목관세를 갖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효율 또는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Ray [46]는 미국과 해외의 관세, 그리고 미국과 해외 비관세장벽 모두가 미국의 기술숙련집약도와 逆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한국의 기술숙련집약도와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 간에는 逆의 관계를 상정한다.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이 비교열위의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사양산업은 낮은 기술, 저성장 등으로 특징지어지므로 이들 요인 또한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과 正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높은 한국 기업의 진출은 이와 같은 선진국 비교열위산업과의 관련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한국의 산업성장률, 노동생산성은 OECD 제국의 對韓國 非關稅障壁과 逆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규제유형에서는 수량규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가격규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규제 중에서도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반덤핑관세를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정의하고 있는 GATT 제 6조나 미국의 반덤핑법에 근거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빈번한

11) 상품분류별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는 李載冕([6], pp. 103~112)을 참조하라.

것은 한국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¹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대용변수로서 동일 기준년도하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과 수출업자의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수출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사용하였다. 상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덤핑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덤핑가능률이라 부른다. 또한 한국내 시장가격의 상승은 명목임금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對韓國 非關稅障壁, 특히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한국내 덤핑가능률(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수출물가지수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과 正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자연적 덤핑이 발생하므로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절하율 역시 대한국 비관세장벽과 正의 관계를 상정한다. Patrick A. Messerlin [41]은 1970년~1986년 기간 동안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 건수와 해외 명목환율 인상과 正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5〉에서 보았듯이 관세에 의하여 보호받는 산업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할수록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 비관세장벽까지 집중되어 비관세장벽이 관세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OECD 제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은 正의 관계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Ray [46]는 미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결정요인 중 유일하게 해외 비관세보호만이 상당히 유의한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부분적으로는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부족과 자국 관세율이 보호무역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관세율과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은 正의 관계를 갖는다고 상정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관세장벽의 결정변수 중 시장의 경쟁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産業集中率(concentration ratio)이 있는데, 이것의 무역규제에 대한 영향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Caves [30]는 캐나다의 관세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캐나다 관세율과 4대기업 집중률 간에 逆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ay([45], pp. 105~121)는 미국의 비관세장벽과 미국내 상위 4개사 산업집중률 및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production)이 逆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반면 左承喜(1987), 田溶德과 辛光滉(1992) 등은 무역규제와 산업집중률은 正의

12) Hillman[36], pp. 1182~1183)은 규제국이 자국의 국내시장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반덤핑관세의 부과 정도가 커지게 됨을 증명하고 있다. Hillman의 논리는 이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국내의 시장가격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 정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左承喜([10], p. 112)에 따르면 한국내 산업집중률이 높은 경우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반대세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나 동시에 미국 산업에게 미치는 기대이득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미국측의 압력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재의 국내시장 보호는 국내시장에서 수출업체들간의 談合 또는 獨寡占化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국내시장가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소비자 후생의 감소 및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 특히 덤핑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9], 1991, p. 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각국의 産業集中率과 對韓國 非關稅障壁은 逆의 관계를, 그리고 한국의 산업집중률과 대한국 비관세장벽과는 正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상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의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NTB = f(EXK^+, IMK^-, KLR^-, SKI^-, IGR^-, ULP^+, IRW^+, C-E^+, ERD^+, TBK/A^+, CR4K^+, CR4A^-)$$

여기서 NTB는 OECD 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EXK는 한국의 對 OECD 제국 수출증가율, IMK는 한국의 OECD 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KLR은 資本 대 勞動의 비율, SKI는 기술숙련집약도, IGR은 해당 산업의 성장률, ULP는 단위 노동생산성, IRW는 명목임금상승률, C-E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과 수출물가지수상승률 간의 차인 덤핑가능률, ERD는 對美 달러에 대한 원화의 절하율, TBK/A는 한국의 관세율 및 OECD 제국의 관세율, CR4K는 한국의 상위 4개 기업들의 산업집중률, 그리고 CR4A는 OECD 제국 상위 4개 기업들의 산업집중률이다. 위 식의 각 설명변수 위에 표기된 부호는 대한국 비관세장벽과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IV. 資料 및 實證分析 結果

1. 자료의 정의 및 출처

일반적으로 무역제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과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¹³⁾ 명목보호율은 무역제한조치가 개별 상품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쉽게

13) 명목보호율이란 국내생산자가격과 국제가격(border price)의 차이를 국제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실효보호율은 국내가격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와 국제가격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의 차이를 국제가격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南宗鉉 [4], p. 100).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업의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호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실효보호율이 사용되는데,¹⁴⁾ 실효보호율은 몇 가지 이론적 가정하에서 부분균형방식(partial equilibrium framework)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다.¹⁵⁾ 따라서 가정을 배제한 현실 세계에서는 실효보호율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각국은 무역제한조치로서 관세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산업보호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목보호율이든 실효보호율이든 그 추정이 용이치 않다.¹⁶⁾

또한, Ray [45, 46]는 ITC가 발표한 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미국의 상품분류(TSUS)가 여타국과 상이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정이 GATT와 일치하지 않으며, Ray 자신도 종속변수로 사용한 비관세장벽 지수에 가중치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보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로서 非關稅障壁의 範圍指數를 사용하였다.¹⁷⁾

독립변수에 있어서 연구대상기간(1974~1991)의 韓國의 輸出增加率(EXK) 및 韓國의 輸入增加率(IMK)은 관세청의 무역통계연보 및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각년호 자료를 사용하였다.

田溶德과 辛光湜 [8]은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을 1978년 광공업센서스보고서에서 구한 각 산업별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합산하고 이를 각 산업별 노동자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나, 광공업센서스보고서가 매 5년마다 발간되는데 그 발간해에만 무형고정자산항목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각년호에서 고정자산을 구하여 이를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에서 구한 노동자 총수로 나누어 연구대상기간의 資本 대 勞動 比率(KLR)을 구하였다.

産業成長率(IGR)은 당해 산업의 출하액 변동률로 계산되었는데, 출하액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에서 구하였다. 노동력에 대한 技術熟練集約度(SKI)는 총노동수에 대한 전문인력, 관리직과 기술자를 합한 수의 비율로 하였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등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서, 그리고 총노동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구하였다. 附加價值 대 雇傭으로 표시되는 노동생산성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동기간의 名目賃金上昇率(IRW)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勞動經濟年鑑 각년호에

- 14) 실효보호율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W. Max Corden [34]과 Bela Balassa [25]를 들 수 있다.
 15) 실효율의 개념은 완전경쟁적 시장조건, 요소가격의 불변, 중간투입물의 대체성과 해외의 무한정한 수요 및 공급탄력성 등을 가정한다(金光錫과 洪性德 [2], pp. 2~3; 俞正鎬 [5], p. 32).
 16) 명목보호율의 추정을 위해서는 세부 품목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비교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며, 실효보호율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 추정에 사용되는 명목보호율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 결과도 믿을 수 없는 수치밖에 안 된다(金光錫과 洪性德 [2], p. 3).
 17) 자료의 제약으로 빈도지수는 종속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서 1980년을 기준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을 사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은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각월호에서 1985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의 변동률로,¹⁸⁾ 수출물가지수상승률 역시 1985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의 변동률로 한국은행 자료에서 구하였다. 對美 달러에 대한 원화의 절하율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서 구하였다.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상공부 및 재무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은 산출기준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용변수로서 일본관세협회 간행 貿易年鑑 各年호에서 관세부담률(=關稅收入 對 總輸入額)을 사용하였다.¹⁹⁾

시장의 경쟁상태는 주로 공급자인 기업의 수와 기업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업수와 기업규모면에서 시장의 집중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시장집중지수(market concentration index)이다. 시장집중지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上位 k 企業集中率이다. 上位 k 企業集中率은 규모면에서 제일 상위에 속하는 k 개 기업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합제한 것이다.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매출액 이외에 고용자 수와 자산액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 기간에 걸친 기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총체적인 경제력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지수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金大植 외 [3], p. 350). 기업집중률은 Fortune 誌 各年 8월호의 세계 상위 500대 그룹에서 상위 4개사의 매출액으로 구하였다.²⁰⁾

한편, 각 자료의 산업분류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12])상 각 상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SITC 상품분류로 통일시킴으로써 해결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은 OECD 제국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범위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설에서 설정된 모든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SAS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여기서 각 변수에 대한 자료는 1974년도부터 1991년까지의 18개년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및 공선성진단(collinearity diagnostics)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관여되어 있는 변수들을 제거하고, 더빈-왓슨(Durbin-Watson) 검정통계량

18) 자료의 제약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비교역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비교역재의 가중치가 약 1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크게 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일본관세협회의 무역연감 [24]에는 1974년~1988년 기간의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의 관세부담률이 나타나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1974년~1983년 기간의 관세부담률이 나타나 있다.

20) i 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Si 라 하면 上位 k 企業集中率 CRk 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CRk = \sum_{i=1}^k Si$$

〈표 7〉 OECD 제국 비관세장벽의 결정요인

	변수	회귀계수	t값
OECD 제국	절편	42.789963	7.735
	KLR	-0.872074	-3.320***
	IRW	-0.333031	-1.860*
	C-E	-0.323911	-1.599
	ERD	0.511841	2.821**
	$\bar{R}^2 = 0.4555$		$F = 4.555$
미 국	절편	43.665787	6.518
	IMK	0.140553	1.211
	KLR	-1.223380	-3.693***
	IGR	-0.236215	-1.187
	C-E	0.189330	0.648
	ERD	0.519952	2.279**
$\bar{R}^2 = 0.5932$		$F = 5.958$	
일 본	절편	8.186965	2.396
	EXK	0.103156	1.461
	IMK	0.291792	4.197***
	IGR	-0.859366	-8.110***
	ERD	0.601263	4.399***
	TBK	1.037898	5.240***
$\bar{R}^2 = 0.8256$		$F = 17.100$	
유럽공동체	절편	28.111111	4.569
	IMK	0.162095	1.706
	IGR	-0.513587	-2.255**
	IRW	0.174074	0.565**
	ERD	0.536795	2.447
	TBK	0.330709	0.980
$\bar{R}^2 = 0.2162$		$F = 1.938$	
유럽자유 무역지역	절편	-16.155643	-2.102
	EXK	-0.083983	-1.097
	IGR	0.599249	2.412**
	C-E	0.750489	1.889*
	ERD	-0.604862	-1.994*
	TBK	0.836212	1.883*
$\bar{R}^2 = 0.7382$		$F = 10.586$	
호 주	절편	-3.797093	-0.547
	IMK	0.289451	2.069*
	IGR	-1.056889	-3.705***
	C-E	0.456091	1.338
	ERD	0.256113	0.885
	TBK	1.958147	4.884***
$\bar{R}^2 = 0.5529$		$F = 5.205$	

주: 1) \bar{R}^2 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quare)이다.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하다.

〈표 8〉 규제유형별 결정요인

구분	변수	회귀계수	t값
수량규제	절편	34.875877	6.275
	EXK	0.010752	0.076
	KLR	-0.783600	-2.889**
	IGR	-0.224657	-1.463
	C-E	0.049933	0.192
	ERD	0.341332	2.147*
		$\bar{R}^2 = 0.4802$	$F = 4.140$
가격규제	절편	2.371261	4.558
	IGR	0.003386	0.132
	IRW	-0.004945	-0.174
	C-E	-0.047112	-1.665
	ERD	0.048672	2.344**
	TBK	-0.036815	-1.251
		$\bar{R}^2 = 0.3295$	$F = 2.671$
절차규제	절편	5.092216	3.935
	EXK	0.107320	3.316***
	IGR	-0.212303	-5.961***
	C-E	0.167346	2.996**
	ULP	-0.098574	-1.656
			$\bar{R}^2 = 0.6762$

주: 〈표 7〉과 同一.

을 통해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정도를 판정하여 회귀분석상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설명변수는 〈표 7〉, 〈표 8〉 및 〈표 9〉와 같이 나타났다.²¹⁾

본 논문에서는 OECD 제국 비관세장벽과 한국의 수출증가율(EXK)과는 正의 관계, 수입증가율(IMK)과는 逆의 관계를 상정하였으나 수출증가율의 경우 일부 국가만이 기대부호를 보여 주었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수입증가율의 경우 역시 일부 국가가 기대부호를 보여 주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반대부호로서 OECD 제국 비관세장벽과 輸入增加率과 正의 관계를 나타낸 경우에는 유의한 국가(일본, 호주)와 산업부문(일본, 유럽공동체, 유럽자유무역지역의 제조업)이 있었다(〈표 7〉 및 〈표 9〉 참조).

21) 비관세장벽과 수출증가율, 산업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와의 관계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18년간의 반영구적 장벽이기 때문에 시차적용이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선행연구(Ray [45, 46])와 같이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표 9〉 OECD 제국 제조업부문

	변수	회귀계수	t값
OECD 제국	절편	40.119304	8.875
	KLR	-0.971285	4.461***
	IGR	-0.339027	-2.417**
	IRW	0.194461	1.041
	ERD	0.337964	3.140***
	$\bar{R}^2=0.6155$		$F=7.805$
미 국	절편	29.791449	8.318
	KLR	-0.975358	-5.735***
	IRW	0.288559	2.489**
	C-E	0.243140	1.854*
	ERD	0.159646	1.359
	$\bar{R}^2=0.8682$		$F=28.998$
일 본	절편	14.242440	1.800
	IMK	0.584755	3.233***
	IGR	-1.839364	-5.706***
	C-E	0.569824	1.228
	ERD	0.605666	1.901*
	TBK	1.815448	4.027***
	$\bar{R}^2=0.7115$		$F=9.387$
유럽공동체	절편	25.195699	3.938
	IMK	0.182368	1.846*
	IGR	-0.861104	-2.828**
	IRW	0.518972	1.512
	C-E	0.462177	1.385
	ERD	0.301687	1.072
	TBK	0.516390	1.466
	$\bar{R}^2=0.2525$		$F=1.957$
유럽자유 무역지역	절편	21.682575	1.096
	IMK	-0.125759	-2.342**
	IGR	0.888730	3.089***
	SKI	-3.183484	-1.479
	ERD	-0.305671	-1.256
	$\bar{R}^2=0.7351$		$F=12.796$
캐 나 다	절편	86.521205	3.967
	IMK	0.186213	1.495
	IGR	-1.404688	-3.850***
	SKI	-4.833415	-2.033*
	C-E	0.394545	0.846
	ERD	0.758022	2.049*
	$\bar{R}^2=0.5769$		$F=5.637$
호 주	절편	52.987328	5.333
	EXK	-0.244789	-1.708
	IMK	0.104315	0.557
	KLR	-1.851986	-3.641***
	IGR	-0.283516	-0.846
	ERD	0.293732	1.028
$\bar{R}^2=0.4541$		$F=3.829$	

주: (표 7)과 同一.

한편, 資本 대 勞動 比率(KLR)이 OECD 제국 전체 및 미국 비관세장벽과 逆의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Ray [45]가 비관세장벽은 노동집약도와 逆의 관계, 자본 대 노동 비율과는 正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술숙련집약도(SKI)가 제조업부문에서 유럽자유무역지역, 캐나다의 비관세장벽과 逆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선진국이 자국의 미숙련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Cheh [31]를 부정하고 Ball [29]과 Ray [46]를 지지하는 것이다(〈표 9〉 참조). 産業成長率(IGR)은 거의 모든 회귀분석에서 기대부호 및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OECD 제국 비관세장벽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 준 반면, 勞動生産性(ULP)은 절차규제의 결정요인에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한편, 가격규제의 사용중대에 따라 OECD 제국 비관세장벽과 명목임금상승률(IRW), 덤핑가능률(C-E) 및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절하율(ERD)과 正의 관계를 상정하였는데, 대부분 기대부호를 보여 주고 있으나, 명목임금상승률(IRW)은 OECD 제국 전체와 미국 제조업부문에, 그리고 덤핑가능률(C-E)은 유럽자유무역지역 및 절차규제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원화의 절하율(ERD)은 대부분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원화의 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가격규제를 증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비관세장벽과 한국의 관세율(TBK)이 正의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상정하여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검증하였는데, 일본, 유럽자유무역지역, 호주 등의 비관세장벽의 경우 유의한 기대부호를 보여 이들 국가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및 〈표 9〉 참조).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 및 OECD 제국의 산업집중률(CR4K 및 CR4A)과 正의 관계를 상정하여 OECD 제국의 산업보호가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利益集團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規制理論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田溶德과 辛光湜 [8]처럼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V. 要約 및 結論

本論文에서는 OECD 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범위지수와 빈도지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들 나라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았다.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의 범위지수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증가율

이 가장 컸던 198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빈도지수는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1991년에 와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및 유럽공동체는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유형별로 보았을 때 수량규제의 범위지수 및 빈도지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다른 규제유형에 비하여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1987년도까지는 절차규제가 컸으나 1987년 이후에는 한국의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절차규제는 상당히 완화된 반면, 반덤핑관세의 증가로 가격규제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OECD 국가의 비관세장벽 전체 평균 범위지수보다 對韓國 非關稅障壁 범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국가의 비관세장벽은 한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유럽공동체 및 캐나다는 1970년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대한국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국가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자본 대 노동의 비율(KLR)과 산업성장률(IGR) 및 원화의 대미 달러에 대한 평가절하율(ERD)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도가 OECD 국가의 비관세장벽과 逆의 관계를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OECD 제국이 자국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보호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성장률이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과 逆의 관계를 보여 산업성장률이 높을수록 OECD 제국의 비관세장벽을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산업성장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張義泰 [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상품구조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변화하여 총제조업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의 결과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원화의 평가절하율이 OECD 제국 비관세장벽과 正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원화의 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를 증대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조업부문의 경우 일본, 유럽공동체, 유럽자유무역지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수입증가율과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개별국간의 교역 및 산업특성에 따라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결과는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이 무역규제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 유럽자유무역지역, 호주 등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관세율과 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국제교역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분석된 결과가 새로이 탄생될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의 한국이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대한 기여도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가 제기능을 완전 발휘하여 완전경쟁체제로 갈 때까지는 지금까지의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한국에 대해 가해 왔던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더라도 이 부문에 대한 對 한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앞으로의 무역정책에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1. 姜哲圭, 張錫仁, 『加工貿易과 產業組織』, 產業研究院, 1987.
2. 金光錫, 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 第4卷 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pp. 2~26.
3. 金大植 외 2인 共著, 『現代 經濟學原論』, 博英社, 1991.
4. 南宗鉉, “韓國의 貿易政策과 產業保護構造”, 『韓國開發研究』, 第2卷 2號, 韓國開發研究院, 1980, pp. 90~105.
5. 俞正鎬, “實效保護率의 推定方法”, 『韓國開發研究』, 第4卷 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0, pp. 30~51.
6. 李載冕, “先進諸國의 非關稅障壁에 관한 實證的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7. ———, 金一中, “先進諸國의 對韓國 非關稅障壁의 推移와 政策課題”, 『韓國貿易學會誌』, 第18卷, 韓國貿易學會, 1993, pp. 155~182.
8. 田溶德, 辛光湜, “韓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 決定要因”, 『經濟學研究』, 第40輯 第1號, 韓國經濟學會, 1992, pp. 133~151.
9. 張義泰, 『最近의 우리나라 輸出不振의 原因과 對應方案』, 韓國經濟研究院, 1991.
10. 左承喜, “市場開放壓力과 對應의 政治經濟學的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9卷 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7, pp. 89~118.
11.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5~1991.
12. ———, 『한국표준산업분류』, 1984.
13.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74~1991.
14. 大韓貿易振興公社, 『非關稅障壁의 實態(上·下) (貿公資料 13~48)』, 1974.

15. _____, 『主要國의 輸入規制調査』, 1977.
16. _____, 『主要國의 輸入規制 現況』, 1981~1985.
17. 産業研究院, 『先進國間 貿易摩擦과 우리의 對應策』, 1982.
18. _____, “對美·日·EC 輸出不振 原因과 對策”, 『KIET Seminar Paper 90~17』, 1990.
19.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감』, 1975~1991.
20. 韓國貿易協會, 『主要 先進國의 輸入規制 總覽』, 1985~1992.
21. _____, 『무역통계』, 1974~1991.
2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75~1991.
23. _____, 『조사통계월보』, 各年 2월호.
24. 日本關稅協會, 『貿易年鑑』, 1977~1991.
25. Balassa, B.,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 Press, 1971.
26. _____, “The ‘New Protection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of World Trade Law*, 12, 1978, pp. 409~436.
27. Baldwin, R. E., “Determinants of the Commodity Structure of U.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61, Mar. 1971, pp. 126~146.
28. _____, “Trade and Employment Effects in the United States of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66, May 1976, pp. 142~148.
29. Ball, D. S., “Factor-Intensity Reversal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ctor Costs and Factor Us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Feb. 1966, pp. 77~80.
30. Caves, R. E., “Economic Models of Political Choice: Canada’s Tariff Structur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9, May 1976, pp. 278~300.
31. Cheh, J. H., “A Note on Tariffs, Nontariff Barriers, and Labor Protection in United States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No. 2, April 1976, pp. 389~394.
32. Chow, P. C. Y. and M. Kellman, “Anti-LDC Bias in the U.S. Tariff Structure: A Test of Source Versus Product Characteristic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4), November 1988, pp. 648~653.
33. Clark, D. P.,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e Tokyo Round,” *Journal of Business*, Vol. 60, No. 2, 1987, pp. 297~306.
34. Corden, W. M., “The Structure of a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Protective

-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1966, pp. 221~237; Reprinted in Jagdish N. Bhagwati, *International Trade: Selected Readings*,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pp. 108~128.
35. Deardorff, A. V. and R. M. Stern, "The Structure of Tariff Protection: Effects of Foreign Tariffs and Existing NTB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4), November 1985, pp. 539~548.
36. Hillman, A. L., "Declining Industries and Political Support Protectionist Mo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72(5), December 1982, pp. 1180~1187.
37. Hufbauer, G. C.,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Raymond Vern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0.
38. Laird, S. and A. Yeats, "Trends in Nontariff Barriers of Developed Countries, 1966~1986,"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6(2), 1990, pp. 299~325.
39. Lavergne, R. P., *The Political Economy of U.S. Tariffs: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40. Marvel, H. P. and E. J. Ray, "The Kennedy Round: Evidence 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3(1), March 1983, pp. 190~197.
41. Messerlin, P. A., "The EC Antidumping Regulations: A First Economic Appraisal, 1980~1985,"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5(3), 1989, pp. 563~587.
42. Nogués, J. J., A. Olechowski and L. A. Winters,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ndustrial Countries' Imports,"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 September 1986, pp. 181~199.
43. Pincus, J. J., "Pressure Groups and the Pattern of Tariff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No. 4, August 1975, pp. 757~778.
44. Piontek, E., "Anti-dumping in the EEC-Some Observations by an Outsider," *Journal of World Trade Law*, 21(4), August 1987, pp. 67~93.
45. Ray, E. J., "The Determinants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Restric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1), February 1981, pp. 105~121.
46. _____,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the United States and Abr-

- oa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3(2), May 1981, pp. 161~168.
47. Ray, E. J. and H. P. Marvel, "The Pattern of Protection in the Industrialized Worl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3), August 1984, pp. 452~458.
 48. Walter, I., "Nontariff Protec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Some Preliminary Evidence," *Economia Internazionale*, Vol. 55, May 1972, pp. 335~354.
 49.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parency in World Trading Conditions*, TD/B/940, Geneva, 1983.
 50. ———, *Protectionism, Trade Relations, and Standard Adjustment*, TD/274, Belgrade, 1983.
 51. ———, *Protectionism and Standard Adjustment in the World Economy, Part I: Analysis of Major Issues and Policy Requirements*, TD/B/981, Geneva, 1984.
 52. ———, *Problems of Protectionism and Structural Adjustment, Restrictions to Trade and Structural Adjustment*, TD/B/1039, Geneva, 1985.
 53. ———, *Problems of Protectionism and Structural Adjustment*, TD/B/ 1081, Geneva, January 1986.
 54. ———, *Problems of Protectionism and Structural Adjustment*, TD/B/ 1126/Add. 1, Geneva, January 1987.
 55. ———,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s of Definition and Methodology Employed in the UNCTAD Data Base on Trade Measures*, TD/B/AC. 42/5, Geneva, 1988.
 56. ———, *Review*, No. 1, 1989.